

#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638
----------	------

2021년 9월 10일  
보건복지위원회

### 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년 08월 11일 조상호 의원 외 10명
2. 회부일자 : 2021년 08월 18일
3. 상정일자 :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 
【2021년 9월 8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】

#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조상호 의원)

#### 1. 제안이유

- 코로나-19 바이러스 지역감염 확산이 장기화되고 있고, 지역 내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로 인한 집단감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.
- 상위법인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면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및 폐쇄를 명령하는 권한이 시·도지사까지 확대된 바 있음.

- 따라서 이를 조례에도 반영해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게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9조제2항및제3항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참조)
- 다. 기타사항 : 신·구 조문대비표 참조

### Ⅲ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#### 1 개정안의 취지

- 개정안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·시설에 대하여 시장이 운영 중단 또는 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코로나19)의 확산방지를 위해 발의되었음.

####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-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전 세계적에서 2억 467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, 이 가운데 432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.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8월 12일까지 총 21만 8,19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2,138명이 사망하였고, 서울시는 2021년 8월 11일 현재 총 69,831명이 확진되었으며, 54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.<sup>1)</sup>
- 특히 국내 최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인 2020년 1월 20일부터 1년간 확진자의 주요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지역집단발생은 전체의 45.4%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감염경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<sup>2)</sup>
- 국내 첫 집단감염 사례가 보고(신천지 대구교회 관련, 2020.2.18.)된 이후 1년 간 지역사회 내 대규모 또는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는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, 종교관련 및 요양병원·요양시설 등에

1) 서울시. (2021). 서울시 코로나19대응 주요소식 367호 (2021.08.12.)

2) 장진화 외(2021)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국내 주요 집단발생 1년간 특징(2020.1.20.부터 2021.1.19.까지), 주간 건강과 질병, 14(9). 질병관리청.

서 다수의 집단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있음.<sup>3)</sup>

- 또한 2021년 8월 11일, 0시 기준 서울시 확진자 주요 감염경로별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확진자 접촉 (41.3%), 다중이용시설 (9.9%), 직장 (5.7%), 병원 및 요양시설 (4.2%), 종교시설 (3.5%), 해외유입 (2.1%)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.<sup>4)</sup>
- 이처럼 방역수칙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을 통해 감염되는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기존에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었던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·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과 폐쇄 명령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이 2021년 3월 9일자로 개정된 바 있음.
  -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명령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된 것임.<sup>5)</sup>
-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장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·시설의 운영중단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(생)	제1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

3) 장진화 외(2021)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국내 주요 집단발생 1년간 특징(2020.1.20.부터 2021.1.19.까지). 주간 건강과 질병. 14(9). 질병관리청.

4) 서울시. (2021). 서울시 코로나19대응 주요소식 367호 (2021.08.12.)

5) 제384회 국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

현행	개정안
<p>략)  <u>&lt;신 설&gt;</u></p>         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<u>② 시장은 법 제49조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제2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·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</p>

### 3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바, 법령 및 조례와의 체계성 측면에서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.
- 종교시설과 같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활동하는 경우나 음식점, 유흥시설과 같이 일회적인 활동에서는 발생 규모가 상대적

으로 큰 것이 확인됨. 또한 실내공간에서의 감염의 경우 대부분의 집단감염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, 방역조치가 미흡할 경우 대규모 감염 사태로 번질 위험이 있으므로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됨.<sup>6)</sup>

-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대응 및 복구가 이루어지는 곳은 지역의 현장이기 때문에 감염병 재난 대응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음.<sup>7)</sup> 이러한 측면에서 해당 개정안은 방역의 주체로서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---

6) 이진희·박민숙·이상원(2021). 수도권 지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발생 시기별 감염경로 다이내믹스. 보건사회연구 41(2). pp.7-26.

7) 한국지방행정연구원(2020).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재난 대응의 진단 및 과제. 지방자치 정책브리프(88)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조상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63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11일

발 의 자 : 조상호, 권수정, 김경영,  
김경우, 김제리, 김화숙,  
박기재, 송재혁, 이병도,  
이영실, 이정인 의원(11  
명)

## 1. 제안이유

- 코로나-19 바이러스 지역감염 확산이 장기화되고 있고, 지역 내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로 인한 집단감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.
- 상위법인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면서 방역 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및 폐쇄를 명령하는 권한이 시·도지사까지 확대된 바 있음.
- 따라서 이를 조례에도 반영해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게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9조제2항및제3항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

다. 기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(첨부)

##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법 제49조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·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